

日本福島原電에서 처음 労災보상

— 작업원의 自血病사망에 —

東京電力의 福島 제1발전소에서 근무한 남성작업원(사망당시 31세)의 労災보상이 1991년에 처음 인정 판명되었다.

이 작업원은 1979년 11월부터 '80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원자로내의 配管부식균열 대책공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후 만성 骨髓性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88년 2월에 31세로 사망했다. 동년 9월에 유족으로부터 福島의 富岡노동기준감독서에 労災인정의 청구가 있었다.

작업원이 11개월 동안에 피폭한 선량은 40mSv로 원자로 규제법상 방사선 방호기준(년 50mSv)내에 있었지만, 노동성의 労災인정기준에 의한 선량한도(년 5mSv×종사년수)를 上廻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기준요건에도 해당된다는 판단에서 '91년 12월의 작업시의 피폭이 백혈병의 원인이라는 労災인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전국에서 첫번째 경우이다.

한편 5월 6일에는 中部電力의 濱岡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에 종사하여 백혈병으로 사망한 원자력발전소 노동자의 유족으로부터 濱岡 노동기준국에 대한 노동재해 인정 청구가 있었다.

청구측은 濱岡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에 종사한 남성작업원(사망당시 29세)의 양친이며, 사인은 만성骨髓性 백혈병이였다. 노동성에서는 “지금부터 조사할 예정”이라 말하고 있다.

노동성에 의하면, 이 福島와 濱岡의 사례를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작업피폭을 이유삼은 労災인정청구가 지금까지 5건 있다. 이 중 1건은 '82년에 島根노동기준 감독서에 청구한 것으로, 이것은 労災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92년 2건의 청구가 神戶노동기준 감독서에 있었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閣議 후의 회견에서 村上正邦노동장관은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종사자 피폭선량 한도에 대한 하향조정 검토를 시급히 하도록 관계省廳에 권고할 뜻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성의 久保田 副主任인 중앙노동 위생전문관은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90년에 있는 권고에 따른 재검토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현재의 방사선 방호기준을 労災인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ICRP의 '90년 권고(권고 60)에는 종사자의 피폭선량한도가 “5년간에 평균 20mSv를 초과하지 아니한(임의의 1년간 선량이 50mSv를 초과하지 아니한)것”이라 되어 있어, ICRP의 '77년 권고(권고 26)에 따른 현재의 기준인 “연 50mSv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현재, 국내의 관련법령에 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방사선 심의회에서 검토중이다.

[해설]

방사선 방호기준과 勞災기준 에 노동성 “별개라는 인식”

노동성은 1976년 11월에 노동기준국장의 통달형식으로 “電離방사선에 의한 질병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운전·保守요원이나 방사선 검사기사들의 직업병구제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백혈병에 관하여는 ① 상당량의 방사선피폭 ② 피폭개시 후 1년 이내의 발병 ③ 骨髓性 백혈병 또는 임파성 백혈병이 여야 한다는 것이 인정조건이다. 첫번째 요건의 “상당량”에 관해서는 $0.5\text{rem}(5\text{mSv}) \times$ 피폭업무 종사연수를 말한다.

이 0.5rem 라는 기준은 방사선의학의 전문가나 일반 공중위생의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일반대중에 대한 당시의 법적 피폭선량한도와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며, 우선 청구가 있을시에는 노동기준국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백혈병은 원인을 특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검토를 거친 후에 労災 적용의 가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에 제시된 피폭선량 한도는 연단위로 보면, 사업자측으로는 방사선 방호기준의 “연 50mSv 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기준보다 10배 엄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동성의 石井義脩 직업병 인정대책실

장보좌관은 “방사선방호기준과 勞災인정기준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테면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약 2m의 높이에서 낙하하면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방사선 방호기준에 상당)이라면, 1m반의 높이에서 낙하하여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勞災인정의 기준이 (사업자측으로 보아) 보다 엄격한 것으로 생각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고 하며 勞災와의 성격차 이를 설명한다.

실제로 노동성은 電離방사선의 장해방지 규칙에서 방사선방호에 관한 종사자의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방사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省聽의 관련법령과의 획일화(끼워맞춤)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등 규제법상의 방호기준과 같은 수치이다.

이 방사선방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종사자의 피폭선량은 '91년과 '92년 모두 연평균 최저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전력회사가 방사선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低放射線領域의 방사선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現狀과, 암발생과의 인과관계, 그 메카니즘이 완전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만큼 이 미묘한 문제의 취급에는 신중이 필요하다. 적어도 사회적 논의 속에서는 숫자만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사태는 회피해야 할 것이다.

('93. 5. 13 일자 日本原産新聞)